

# 학생동아리 관리규정

제정 1993. 3. 10. 개정 1994. 1. 13.  
개정 1998. 7. 24.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학칙 제63조에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의)**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 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63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20명이상 이어야 한다.(전공 동아리 제외)
3.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5.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취임 승락서 1부
4.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5. 회칙 1부

② 동아리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1. 재등록신청서 1부
2.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3.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4.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회칙 1부 (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제5조(승인)** ① 제4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

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동아리로 인정된다. <개정 2014.3.1.>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동아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의 회칙에 따른다.

②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는 그 명단을 7일 이내에 교학처(학생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7조(행사승인)**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학생팀)에 비치된 행사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학생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개정 2014.3.1.>

구 분	제출기일	승인사항
동아리의 일반집회	5일전	교학처장
교내집회 및 행사	7일전	교학처장
교외집회 및 행사	10일전	총장
타 대학과 연합행사	1개월 전	총장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승인한다.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입장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 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학생팀)에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3.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통폐합 할 수 있다.

③ 동아리를 해체 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10조(상벌관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2.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3.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차기집회 중지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2. 한학기간 활동중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불법 집회 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3.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 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처벌기간중인 동아리 (학생) 라도 정상에 따라 감별 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